

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

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일부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됨에 있어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0년 7월 3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1. 지 정 명 : 일방통행로 지정
2. 지정목적 :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일부구간의 교통흐름 개선
3. 지정구간 (※ 붙임1 참조)
 -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일부구간(L=640m)
 - 구간 : 비씨디몰 ~ 중산동 1886-14
 - 방향 : 비씨디몰 ⇒ 중산동 1886-14
4. 관련근거: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(행정예고)
5.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icjg.go.kr>)
6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0. 7. 3 ~ 7. 23. (20일간)
7. 의견제출
 - 가. 제출기한 : 2020. 7. 3 ~ 7. 23. (20일간)
 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(FAX : 032-760-7688)
 - 다. 제출서식 : 붙임2 참조
 - 라. 기재내용 :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), 연락처, 주소, 의견

마. 보내실곳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100(운남동) 교통과

(☎032-760-7752)

※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바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교통과 (☎032-760-7752)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현장위치도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

【붙임1】

현 장 위 치 도



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일부구간(L=640m)

(방향 : 비씨디몰 ⇒ 중산동 1886-14)

- ①  : 일방통행로 지정 방향
②  : 기존 양방통행 존속

【붙임2】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